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-1513 호

## 의무보험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(보험 등의 가입 의무)를 위반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(지연)가입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 보관기간경과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 및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2. 11. 25.

서대문구청장



1. 공고내용 : 2022년 11월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2. 11. 25. ~ 2022. 12. 09.(14일간)
3. 공고대상 : (주)서대\*\*\*\*(01어6\*\*\* ) 등 69명
4. 공고방법 :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
5. 자료제출 :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(과태료 감경)에 해당하는 대상자(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등)는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6. 과태료 납부안내  
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%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,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경 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과태료 부과 이후 납부기한 경과 시, 3%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.2%에 해당하는 중가산금(60개월)이 가산됩니다.

※ 과태료 납부방법 등 공고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,  
교통행정과 (☎ 02-330-1162)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